2025년도 부처협업형(농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농산업 제조업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업지원 서비스(농산업 수출 활성화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농산업 제조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

<주요 일정>

신청 · 접수기간	선정평가	협약	
`25년 2월 14일 ~ '25년 3월 14일	′25년 3~5월	′25년 5월~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변경 사항> (□□는 생략가능)

구 분	사업공고 즉	F요변경사항	
丁 正	2024년도	2025년도	
신청서류	• 사업신청시 사업신청서 제출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신청시 완성된 사업계획서 제출	
선정절차 변경사항	신청 접수▶검토▶평가▶지원▶기술성 평가 ♥전정	신청 접수 ▶ 검토 ▶ 서면 ▶ 기술성 평가 ▶ 현장 확인 ▶ 최종 선정	
서면평가	•서면평가 필수 수행	• 운영기관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가능	
사업관리 변경사항	중간 점검 ▶구축진행 ▶최종 감리 ▶ 전검 ▶ 집중 A/S ▶평가	중간 점검 •구축진행 • 최종 점검 • 평가 • 집중 · 재평가	
중간점검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	•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협약후 3개월 내)	
최종점검	• 최종감리 후 완료점검 진행	• 최종 점검으로 통합(최종점검 시 감리수행)	
집중A/S	• 집중 A/S기간 6개월 필수 수행	• 최종평가결과 "보완" 시 집중A/S 수행 및 재평가 진행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농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하여수출 경쟁력 제고
- o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농산업 수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ㅇ (연계 지원)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연계 지원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해외 인허가 취득, 마켓테스트 등 비용 지원
 - (농산업 해외 박람회(개별)) 해외 농업 박람회 개별 참가 비용 지원
 - (농산업 해외 박람회(종합)) 해외 농업 박람회 한국관 참가 비용 지원
 - (수출 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지원
 -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해외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 컨설팅 지원

□ 지원 과제 및 조건

- ㅇ (지원 과제) 농산업 제조기업 15개 내외
- 0 (지원 조건)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50% 이내	중간1 이상
고도화(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3070 VI-II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동일수준)" 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운영기관의 기업지원서비스 수행 필수(최종평가 시 증빙 제출)
- ㅇ 운영기관의 기업 지원서비스를 통한 도입기업 지원(붙임 3 참고)
- *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구분	현장 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지원 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 관리	
	IoT/IoS 기반의 CPS화			인터넷 공간 상		
고도화	IoT/IoS화		oS(모듈)화 반의 진단 및 운영	빅데이터/설계 개발 가상 시뮬래아션/ 3D프린팅	인다핫 중간 경 비즈니스 CPS 네트워크 협업	
중간수준2	설비제어 자동화	실시간 공장제어	공장운영 통합	기준정보/기술정보 생산 및 연결 자동화	다품종 개발 협업	
중간수준1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실시간 의사결정	기능 간 통합	기준정보/기술정보 개발 운영	다품종 생산 협업	
기초수준	실적집계 자동화	공정물류 관리(POP)	관리 기능 중심 CAD 사용 기능 개별 운용 프로젝트 관리		단일 모기업 의존	
ICT 미적용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전화와 이메일 협업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2. 14.(금) ~ '25. 3. 14.(금) 17시까지
 - o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ㅇ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o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 공급기업)	 사업 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도입 기업 제출	-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 -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 [붙임 4. 참조] * 최근 3개년('22~'24)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정보제공 미동의 시 계량점수 해당 평가항목(수출성장기업, 수출실적) 0점 처리 - [수출예정기업 대상] 해외 MOU, 해외 인·허가, 특허, 해외 마켓테스트 결과 자료 등 수출 준비 증빙 자료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붙임 2 참조)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
 - 농기계, 농약, 비료, 사료, 동물용의약품, 종자, 시설재자분야 **제조기업 지원**
 - 사업자 등록증 내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종목은 아래 종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면 평가 시 수출 품목 HS Code를 검토하여 분류 예정
 - 농기계: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농약: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비료: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합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사료: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배합 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종자: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 시설자재 및 스마트팜: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농업 및 축산 시설자재에 해당되는 제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ㅇ 수출 기업 또는 수출 예정 기업

- TmyDATA 수출 실적으로 수출 기업 여부 확인
- 해외 MOU, 인·허가, 마켓 테스트 등 해외 수출을 준비 중인 증빙자료로 수출 예정 기업 여부 확인

0 지워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 1 참조)

□ 필수 이행사항

o '25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연계 지원 사업 중 1개 사업 이상을 '25년도에 신청 후 이행(붙임 3 참조)

3. 평가 및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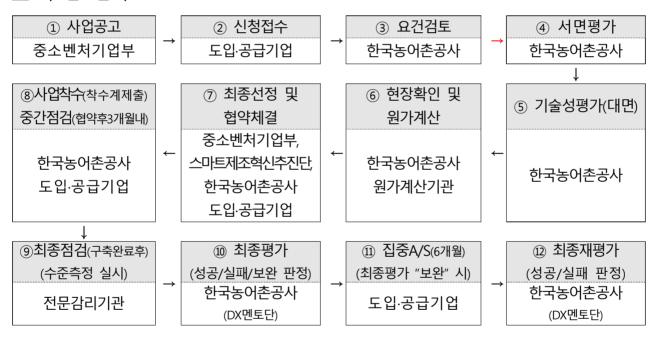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붙임 2 참고)

o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o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방식, 달성 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ㅇ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15개 지원 기업 확정
 - 다만, 중도 포기 및 지원규모 확대 시 평가 순위에 따라 후순위 기업에 지원(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 기업은 제외)
-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산 절차 진행)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동일수준' 예외 사항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
 - * (예시, 초과달성) ①'기초'목표로 수행후 '중간1' 달성, ②'중간1'목표로 수행 후 '중간2' 달성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o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 ① 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200백만원 이하	637	부가세 제외
400백만원 이하	910	구기제 제외
400백만원 초과	1,182	

-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② 교육비: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1 백만원) 필수 편성
- ③ 기술임치비: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o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 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 4천만원 이내에서 편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o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공급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기술교육 (오프라인)	-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 - 비용 : 100만원(집합교육) (사업계획서에 교육비 계상)

-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공급 기업은 "동물용의약품 GMP 교육", "제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 필 수 제출
 - (교육기관)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용의약품 GMP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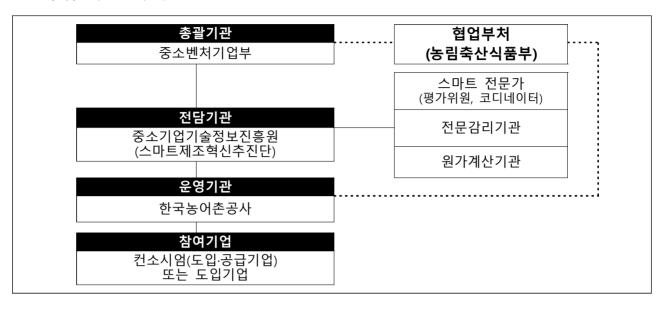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용
동물용의약품 GMP 교육 (기본)	 대상 : 동물용의약품 업계 내 제조품질관리 신규 직원 및 2년차 사원 / 업계종사자 내용 : GMP 기초, GMP 제조소 시설기준 및 품질관리, 밸리데이션(Method Validation), 자율점검 모범사례 비용 : 28만원(집합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동물용의약품 GMP 교육 (심화)	- 대상 : 동물용의약품 업계 내 제조품질관리 경력 10년차 사원 / 수강을 원하는 자 - 내용 : 현행 GMP Date integrity의 이해, 동물과 인체 GMP 상향 비교, KVGMP 우수업체 실사 사례 소개 - 비용 : 28만원(집합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 대상 : 의무교욱이수자(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 - 내용 : 동물약사법령 및 관련 규정 전반, 동물용의약품등 안전관리 및 안전성· 유해성에 관한 사항,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질 및 제조 공정에 대한 사항 - 비용 : 20만원(집합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 기타 사항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구축 완료 후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 구축 수준 미달 시 정부 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 측정)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운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 연계 지원사업 관리
참여기업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6. 문의기관

담당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운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김현태 과장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061-338-5744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factory.kr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 http://agroex.or.kr

붙임 1 동시수행 제한사업 목록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 중인 경우)

사업명(지원유형)		사업연도			
	2021	2022	2023	2024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고도화1, 고도화2)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					
-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일반형)					
-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 디지털협업공장					
-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자율형공장					
-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 단, 집중A/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
- □ **동시 선정·신청 제한사업 목록**('25년 신규 신청인 경우)

사업명	내용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지역특화 프로젝트 포함)	
② 자율형공장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①~⑥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⑤ 디지털 협업공장	
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⑦ 스마트공장 AS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완료 후 신청
() ===== 8 A3A E	(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⑧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①~⑤ 사업 중 하나와 ®,⑨ 사업 동시수행가능 ※ ①~⑤사업에서 FEMS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만
⑨ 제조혁신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동시수행가능

붙임 2 평가 지표

□ 서면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스마트공장 구축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필요성 (30점)	·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15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10	
지원 적정성 (30점)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10	
공급기업 역량 (15점)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 매출액 증가율	5	
도입기업 역량 (20점, 정량평가)	∘ 영업이익 증가율	5	
	∘ 부채비율	5	
	∘수출실적 여부	5	
가점(5)	∘ `25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신청 여부*	5	
* * * * * * * * * * * * * * * * * * *	총 점	100	

* [붙임 5. 참조]

※ (참고) 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

항목	배점				
87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증가율	12%이상	12%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3%이상	3%미만
영업이익증가율	10%이상	10%미만~7.5%이상	7.5%미만~5%이상	5%미만~2.5%이상	2.5%미만
부채비율	60%미만	100%미만~60%이상	140%미만~100%이상	180%미만~140%이상	180%이상
수출실적	0	-	-	-	Х

-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1점), 영업이익 증가율(1점), 부채비율(1점) 부여
- * '2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여
- * '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채비율(3점) 부여

□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기업 역량 (35점)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 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 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 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가점(5점)	-	(5)
	합 계	100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4개)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2	스마트 제조 표준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	사업계획서 (2.6 표준연계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
3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4	「글로벌강소 기업 1,00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지정서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붙임 3

기업 지원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 2025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농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인프라 구축, 판로개척 지원 및 해외 시장정보 제공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농산업 수출 활성화
- (사업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 (사업규모) 지원규모 416개社, 사업비 4,104백만원
- (사업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금액	모집기간*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해외 영업지원, 해외 인허가 취득, 디자인 개발, 통번역, 해외 마켓테스트 등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70%, 자부담 30%)	`25.01.20.~`25.02.07.
농산업 해외 박람회 (개별)	해외 농업 박람회 개별 참가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6백만원 (지원 70%, 자부담 30%)	`25.01.20.~`25.02.07.
농산업 해외 박람회 (종합)	해외 농업 박람회 한국관 참가 비용 지원	부스 운영 비용 (지원 70%, 자부담 30%)	`25.01.13.~`25.02.14.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해외 수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액 지원	`25.02. 中 모집 예정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전액 지원	`25.02. 中 모집 예정

- * 모집기업 미달 시 기간 연장 또는 추가 공고 예정
- o 사업 지원 방법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사이트 접속(www.agroex.or.kr) 후 회원가입 → 농산업 수출활성화 → 공고 및 참가 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가점 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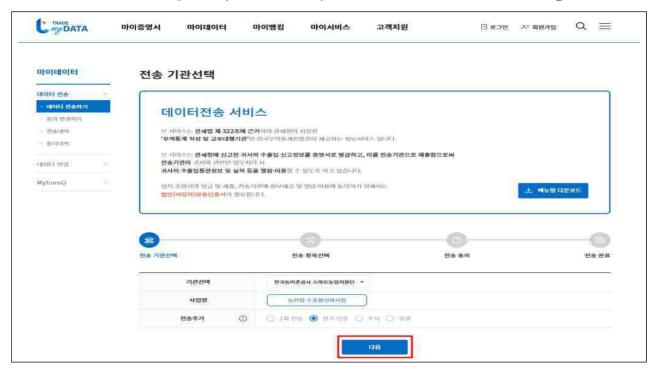
- o 2025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차년도부터 2년간('26, '27) 아래 사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 수출 활성화 사업, 농산업수출업체 제조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사업
 - (KOTRA) K-스마트팜 로드쇼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 스마트팜 수출실증 지원사업
 -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용의약품등 종합지원사업
 - * 각 기관별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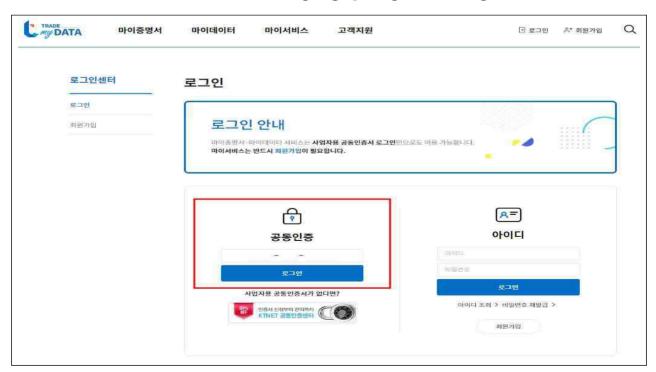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

1. TmyDATA 플랫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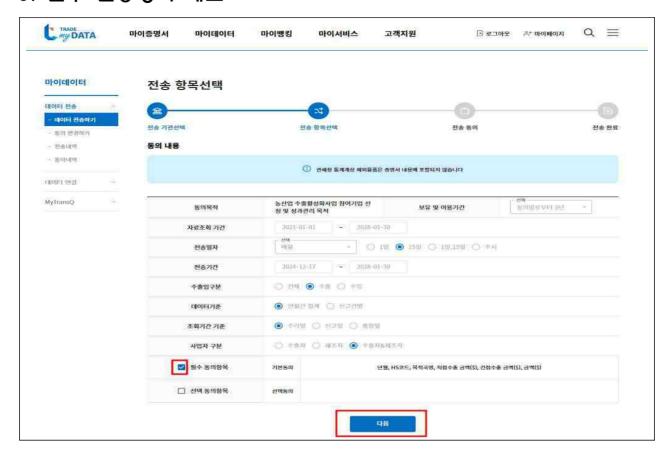
- 일반접속: https://tmydata.or.kr → 마이데이터 → 데이터 전송하기 → 한국농 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전용 URL 접속: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1441&c=281&general=tr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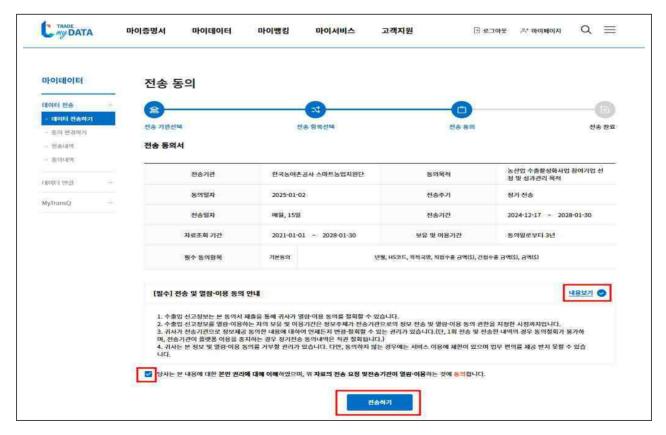
2.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인증 *회원가입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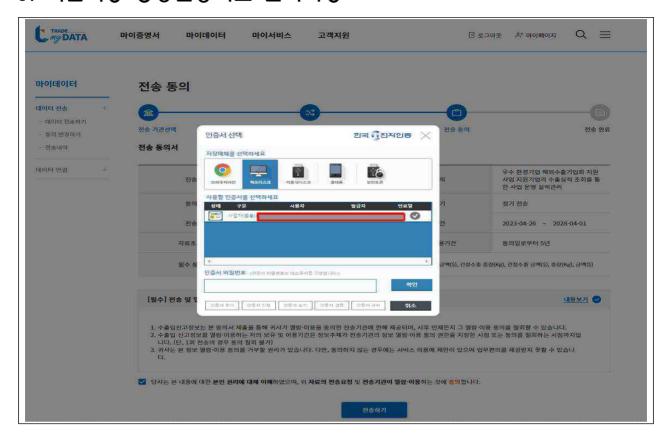
3. 필수 전송항목 체크



4. 열람·이용 동의 및 전송 요청



5.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6. 전송 완료



붙임 5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 지원서 첨부

1.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접속 후 사업 신청

- https://www.agroex.or.kr → 로그인 → 농산업수출활성화 → 공고 및 참가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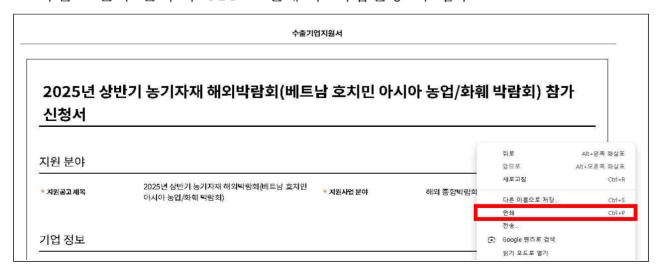


2. 사업 신청 후 지원내역 PDF 인쇄

- https://www.agroex.or.kr → 로그인 → 농산업수출활성화 → 지원내역 클릭



- 화면 오른쪽 클릭 후 PDF로 인쇄 후 사업신청 시 첨부



참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ᆑᄀᇜᄎᅄᄃ
9. 1차 금속 제조업	C24	명균매출액등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Α	
19. 광업	В	_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Н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TIOL	, ,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_ 평균매출액등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P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 P Q S	평균매출액등 - 10억원 이하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